

## 2026년 뉴욕 Revenue-First 성장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

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의 뉴욕 현지 시장 진출 및 실질적 매출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「2026 K-Startup 뉴욕 Revenue-First 성장 프로그램」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19일  
창업진흥원장

※ 본 공고는 창업진흥원 뉴욕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공고로, 국내 및 미국 현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
※ 국내 소재 창업기업과 국외 창업기업 모두 본 프로그램에 신청·참여할 수 있습니다.

※ 본 프로그램은 미국 뉴욕시장 진출 및 매출 신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, 사업화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.

\* 단, 항공권과 숙박 등 기업당 최대 100만원(실비) 지원 예정임

1

###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유망 스타트업의 뉴욕 현지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보 및 매출 증대를 통한 북미 시장 안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
- 지원대상 : 현지진출(희망) 창업기업(국외창업\* 및 플립기업 포함)
  - \* 한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국외(미국)에서 법인을 설립해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일정규모 이상을 보유,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는 7년(신산업 10년) 미만
- 협약기간 : 협약체결일 ~ 10. 30.(예정)
- 선정규모 : 10개사 내외
- 지원내용 : 기업진단 및 타깃시장 진단분석, 미국(뉴욕) 시장진출 실증, 실전과 같은 현지시장 공략에 대한 실질적 경험 등 제공

## 2

## 지원내용

### □ 프로그램 개요

- (프로그램명) 2026 New York Revenue-First Growth Program
- (운영기간) '26.6월 ~ 10월(5개월) \* 3~4일 현지 On-site 프로그램 필수참여

#### < 추진절차(예시) >

기업 선정	기업진단/준비	타깃시장 침투	네트워킹 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선정평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업별 시장진출 전 사전 진단 및 준비사항</li> <li>• 유효 타깃시장 설정 및 타깃기업,유통 리스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실제 타깃시장/유통망 콜드메일 등 연락</li> <li>• 사전 연락 및 미팅약속, 세일즈 키트 점검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실제 유효 타깃대상 미팅 및 네트워킹</li> <li>• 최종보고서 제출 및 과업최종점검</li> </ul>
~'26.6월중	'26.7월(1개월)	'26.8월~9월(2개월)	~'26.10월(3일내외)

\* 선정기업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일정 합의하여 온/오프라인 참여기간을 안내 예정

- (지원규모) 뉴욕 진출(희망) 창업기업 10개사
- (운영방법) 온라인 사전 준비와 뉴욕 현지의 몰입형(단기간) 프로그램으로 운영예정

### □ 주요 프로그램

- 기업별 진단 및 시장전략 고도화<sup>①</sup>, 실전아웃바운드 세일즈<sup>②</sup>, 제품/시장전략 재구성<sup>③</sup>

## 1. 진단 및 GTM 전략 고도화

- (현지화 역량진단) 스타트업이 현재 보유한 사업모델과 미국 내 산업군과의 정합성을 진단, 현지시장 진입 시 진입장벽 및 기회요인 도출
  - 최소 전/현직 C-Level 또는 Director급 관련 심층 인터뷰 지원

- (세일즈 현지화 준비) 미국 (뉴욕) 비즈니스 관습에 맞는 데이터 중심의 세일즈 키트 개편
  - 세일즈를 위한 기본 사전 국/영문 리플렛, 이메일 템플릿, 링크드인 프로필 맞춤형 지원
  - 핵심 고객군 정의, 핵심기업 리스트 추출, 타깃 고객의 Pain-Point 정의 및 점검지원

## 2. 실전 아웃바운드 세일즈

- (멀티채널컨택) 확보된 타깃 리스트를 대상으로 링크드인, 콜드 이메일, 필요시 전화 등 현지 비즈니스 관습에 맞는 다각적 접근 수행
- (진성 바이어/파트너 매칭 및 미팅) 실제 구매 의사나 파트너쉽 가능성이 있는 의사결정권자와의 1:1 비즈니스 미팅 등
- (매칭 CRO 미팅 진행자) 실제 미팅에 공동 진행자(Co-pilot)로 동석하여 비즈니스 협상을 리드하거나 지원

## 3. 제품/시장전략 재구성

- (현지 맞춤형 네트워킹 이벤트) 참여 스타트업의 산업군 관련 현지 바이어, 투자자, 파트너 초청 소규모(Private Networking) 1회 개최
  - 현지 내 생태계 편입될 수 있는 관련 스타트업 커뮤니티, 산업별 협회 관계자와의 접점 등을 마련
- (후속지원 마련) 미팅 이후 계약, MoU, PoC로 이어지기 위한 사후 관리 가이드 등을 제공

### 3

## 신청자격 및 요건

- (신청자격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,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(다음 페이지 '신청제외대상' 참조)
- (지원대상)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뉴욕 기진출, 또는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창업기업\* (단, 신산업창업분야\*는 업력 10년 미만)
  - \* [참고1] : 창업여부 기준표, [참고2] : 신산업 창업분야
  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기업에 해당되는 국외창업기업\*, 플립기업\*\*도 지원가능
    - \* 한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국외(미국)에서 법인을 설립해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일정규모 이상을 보유,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는 7년 미만 기업
    - \*\* 해외(미국)에 지주회사 또는 본사를 신설하고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전환한 기업
- 신청 제외 대상(국외 창업기업인 경우 일부만 해당)

###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
#### < ①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###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
#### < ②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###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(기업)

< ③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
2.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
3.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(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)

- ④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 ([참고3]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) \* 국내외 공통
-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(기업)
- ⑥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·폐업 중인 자 (기업) \* 국내외 공통
- ⑦ 2026년 동 사업 수행사의 전담조직의 장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
- ⑧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- ⑨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  
\* 국내외 공통

□ 의무 및 역할

- 본 사업 참여 인력은 해외 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, 미국 (뉴욕) 실질적 세일즈를 위해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함
- 실제 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업별 상황에 따라 대표 또는 영업이사 등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자가 참여
- 본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해외 체류기간동안 여행자보험에 가입 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 및 수행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## 4

## 신청 및 접수

- 신청기간 : '26.5.19.(화) 09:00 ~ 6.3.(수) 18:00까지 (미국 동부 시간 기준)
- 신청방법 : 구글폼 통해 접수 (첨부파일도 신청 시 업로드)
  - \* 반드시 PDF파일로만 업로드 해야하며 파일크기 최대 10MB 이하
  - \*\* 파일은 제출(업로드) 이후 수정/편집 불가 다만, 신청서 수정은 가능**
- 접수 : <https://forms.gle/DntzHbr1yZXUqevT9>
  - \* 1개 기업 당 1개의 메일계정으로만 신청가능, 2개 이상 계정으로 동일기업 신청 시 최초신청 계정으로 접수 예정 (마감전까지 수정 가능)
- 문의처 : 창업진흥원 뉴욕사무소 [nyc@kised.or.kr](mailto:nyc@kised.or.kr)
- 필수 제출서류

① 사업계획서(자유양식)

\* 영어로 작성, **평가항목(서류/발표)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**하되, 형식 제한 없음 (단, 원활한 검토를 위해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, 최대 10페이지 10MB 이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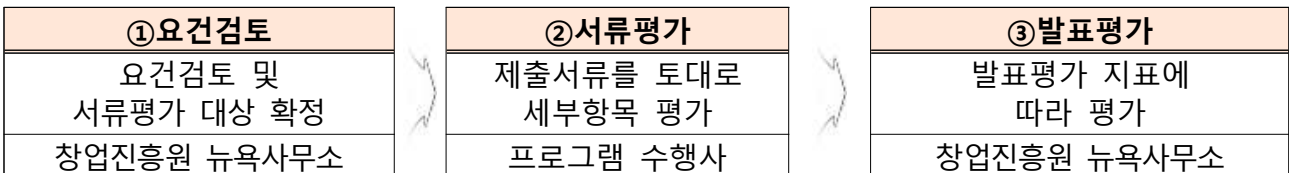
② (국내)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(국외) EIN 확인서

## 5

## 평가 및 선정

- 평가절차
  - 평가는 ①요건검토→②서류평가→③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로 진행하며, 단계별 평가점수는 해당 단계만 적용(서류평가, 발표평가 점수는 개별 산정)
  - \*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은 6월 중순 이후 진행

### < 창업기업 선정 절차(안) >



신청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에서 상시 진행하며,  
선정·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

※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·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평가방법

- ① **요건검토** :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
- ② **서류평가** : 참가신청서,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심사하여 발표평가 대상자(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) 선정
  - \* 서류평가 대상자가 2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 후 발표평가 진행 가능
- ③ **발표평가** : 프로그램 수행사가 포함된 평가위원회가 발표평가 진행하여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선정
  - 인터뷰는 창업기업 대표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, 발표 및 질의 응답을 통해 사업 아이템 및 미국(뉴욕)시장 진출, 의지 등을 확인
  - \* 인터뷰 시간은 기업당 20분 내외이며 영어로 진행
  - \*\* 부득이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직원에 한하여 대체 가능
- ④ **최종선정** :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

□ 평가지표

- (서류평가) 제출한 '사업발표자료'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평가하며 미국(뉴욕) 시장에 적합한 평가항목으로 구성

평가항목	세부내용	배점
프로그램 적합성	- 창업 동기 - 프로그램 참여 목적 부합성 - 미국(뉴욕) 시장 적합성	30점
비즈니스 모델	- 사업 아이템 차별성 및 우수성 - 미국(뉴욕) 산업(시장) 분석 우수성 - 비즈니스모델의 지속성, 성장 가능성	30점
글로벌 진출 역량 및 가능성	- 미국(뉴욕) 시장에 맞는 진출전략 우수성 - 미국(뉴욕)시장 진출 및 매출 가능성 - 현지 시장 타겟팅의 구체성	40점

- (발표평가) 제출한 '사업발표자료' 및 '발표'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심층적인 평가항목 등으로 구성

평가항목	세부내용	배점
프로그램 적합성	- 프로그램 참여 의지 - 프로그램 참여 목적 부합성 - 제품/서비스의 개발(상용화) 정도	30점
비즈니스 모델	- 사업 아이템 차별성 및 우수성 - 미국(뉴욕) 산업(시장) 분석 우수성 - 비즈니스모델의 지속성, 성장 가능성	30점
글로벌 진출 역량 및 가능성	- 미국(뉴욕) 시장 진출 준비 정도 - 미국(뉴욕)시장 진출 및 매출 가능성 - 프로그램 참여계획 구체성 및 참여도 정도	30점
팀구성	- 관련 경험, 경력, 기술보유 등 우수성	10점

## 6

### 유의사항

- (유의사항) 다음과 같은 경우 선정 취소,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  - 참여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,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 (제출서류 미제출의 경우도 해당)
  - 선정된 후 타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참여에 비협조적이거나 중도 취소하는 경우(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불성실 기업도 중도취소 조치 가능)

**참고 1**

**창업 여부 기준표**

신청기업구분	상세 구분		창업여부	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	창업아님	
		이종	창 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창업아님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	폐업 3년 초과	창 업
동종창업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	
		부도/파산 - 2년 초과 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 업 창업아님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창 업		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 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 업 창업아님
	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 업
	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	창업아님
		동종창업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 업
			자회사 여부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
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창업아님		
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	창업아님	
	이종		창 업	

- 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- 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- ※ 과점주주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- ※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 : ①2020.10.8.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
- "개인사업자 설립일이 '20.10.8. 이전이면서,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"한 경우 "창업"으로 판단  
②영 시행(2022.6.29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
## 참고 2

## 신산업 창업분야

※ 출처 :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5조(유망신산업·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)

①	인공지능	⑩	자율주행차	⑲	스마트홈
②	빅데이터	⑪	전기수소차	⑳	신재생에너지
③	5G+	⑫	바이오	㉑	이차전지
④	블록체인	⑬	의료기기	㉒	CCUS (탄소포집·활용·저장)
⑤	서비스플랫폼	⑭	기능성 식품	㉓	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
⑥	실감형 콘텐츠	⑮	드론·개인이동수단	㉔	우주
⑦	지능형 로봇	⑯	미래형 선박	㉕	차세대 원전
⑧	스마트제조	⑰	재난 / 안전	㉖	양자
⑨	시스템반도체	⑱	스마트시티	㉗	사이버 보안

**참고 3****지원 제외 대상 업종**

- ▶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연번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56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카지노 운영업	91242
4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5	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\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[kssc.kostat.go.kr](http://kssc.kostat.go.kr)) 참고

- ▶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2 1항 및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의거,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, 해당 업태를 영위하는 자(기업)

연번	업태명
1	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
2	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자문, 개발 및 판매
3	가상화폐 거래소업
4	가상화폐 개발업
5	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
6	가상자산 취급업
7	가상자산의 교환, 이전, 매매업
8	암호화폐 공개(ICO)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

\* 단, 가상자산사업자 중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가능

\*\* 기준 업태는 추가·변경될 수 있음